

제315회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4월24일(수)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계속)
11.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13.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1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17.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계속)
18.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3.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4.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5.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2.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3.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4.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5.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6.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유대운·김승남·김성곤·이윤석·민홍철·배기운·신장용·박기춘·정청래 의원 발의)(계속) 5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성곤·김관영·박지원·최규성·한정애·김민기·백재현·정세균·임내현·주승용·신장용·변재일·이한성·배기운·정청래·안민석·윤관석·유기홍·부좌현·최재성·서영교·이윤석·김영주 의원 발의)(계속) 5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유승우·최봉홍·황영철·박인숙·이한성·김태원·이군현·조해진·김상민·이진복·박대출·서용교·안종범·박성호 의원 발의)(계속) 5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신의진·홍문중·김동완·박인숙·함진규·이완영·김한표·강길부·이명수·이이재·이장우·이현승·김태흠 의원 발의)(계속) 5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기호·정

- 회수·황영철·김용태·송영근·이철우·최봉홍·정문헌·조현룡·김진태 의원 발의)(계속) 5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10.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동철·강기정·오제세·이낙연·변재일·주승용·박주선·장병완·이석현·박병석 의원 발의)(계속) 5
11.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최규성·강창일·오제세·장병완·김동철·김상희·김우남·우윤근·노영민·김성곤·양승조·주승용·이윤석·배기운 의원 발의)(계속) 5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김세연·안홍준·유기준·이현승·여상규·노철래·전하진·정우택·신성범·유재중·박인숙·주영순·김희국·김종훈·윤명희·박민식·김도읍·정의화·서용교·현영희·나성린·류지영·김정훈·이재균·정갑윤·문대성·이장우·이채익·이현재·김희정·고희선·이진복·하태경 의원 발의)(계속) 5
13.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양승조·전병헌·김우남·김성곤·이상민·김현미·안규백·김춘진·강장일 의원 발의)(계속) 6
1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6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1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김을동·문병호·장병완·최민희·남인순·박홍근·김태년·김성곤·배기운·노철래·이상민 의원 발의)(계속) 6
17.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유기준·이현재·김정록·정문헌·정두언·윤관석·홍문중·정희수·이에리사 의원 발의)(계속) 6
18.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6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명수·박인숙·한기호·정성호·김동완·김태원·권은희·고희선·김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3337)(계속) 6
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명수·박대동·박인숙·한기호·정성호·김태원·권은희·고희선·김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3347)(계속) 6
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金永柱·정희수·김세연·이한성·이명수·박인숙·심재철·박성호·이에리사 의원 발의)(계속) 6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李宰榮 의원 대표발의)(李宰榮·김정록·이명수·이만우·박인숙·이한성·서용교·손인춘·정의화·김을동 의원 발의)(계속) 6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이이재·박인숙·김희국·권은희·민현주·李宰榮·이종훈·김종훈·김동완·이재오·이종진·김기선·이명수·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6
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정희수·이명수·이한성·정문헌·안홍준·김세연·김성주·유재중·김동완·이종진·金永柱 의원 발의)(의안번호 1953)(계속) 6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권은희·한기호·조현룡·이재영·함진규·정희수·홍문표·문대성·박대동·김근태 의원 발의)(계속) 6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조현룡·권은희·이완영·문대성·하태경·신동우·김상훈·신성범·김희국·황진하·강길부 의원 발의)(의안번호 4438)(계속) 6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3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32.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이한성·문대성·권은희·유승민·정우택·윤진식·나성린·정의화·여상규·주영순·김재원·이만우·주호영·이종진·김종훈·손인춘·이에리사 의원 발의)(계속) 6
33.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이재균·남경필·황진하·이만우·

김태원 · 염동열 · 박민식 · 김세연 · 박대동 · 정몽준 · 강은희 의원 발의)(계속)	6
34.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박수현 · 주승용 · 이윤석 · 윤후덕 · 박남춘 · 배기운 · 김영록 · 신장용 · 변재일 · 김관영 · 김현미 · 조정식 · 김태흠 · 박민수 · 민홍철 · 박혜자 · 이장우 · 문병호 의원 발의)(계속)	6
35.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3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 · 이현승 · 이명수 · 이종진 · 함진규 · 홍문종 · 이이재 · 이노근 · 윤진식 · 김태흠 의원 발의)(계속)	6
3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김민기 · 윤관석 · 김성곤 · 김관영 · 박지원 · 최규성 · 백재현 · 정세균 · 임내현 의원 발의)(계속)	6
3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3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4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박수현 · 이윤석 · 김관영 · 최원식 · 민홍철 · 김현미 · 전순옥 · 임내현 · 양승조 · 배기운 · 조정식 · 김상희 · 김성곤 · 윤후덕 · 이석현 · 박완주 · 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6
4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문대성 · 정희수 · 이명수 · 이현승 · 이종진 · 하태경 · 김태환 · 이장우 · 김을동 의원 발의)(계속)	7
42.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균 의원 대표발의)(이재균 · 김민기 · 金永柱 · 김춘진 · 이채익 · 이노근 · 김성곤 · 박인숙 · 이종진 · 정성호 · 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7
43.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김기선 · 金永柱 · 김우남 · 문대성 · 박인숙 · 신성범 · 안홍준 · 이진복 · 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7
44.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 황영철 · 강기운 · 김정록 · 유기준 · 김명연 · 박인숙 · 서상기 · 강은희 · 정문헌 의원 발의)(계속)	7
45.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김영록 · 이미경 · 노영민 · 김성곤 · 우윤근 · 박수현 · 윤관석 · 이윤석 · 강창일 · 최규성 · 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7
46.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4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 · 이명수 · 신의진 · 정희수 · 김기선 · 김태호 · 김정록 · 박성호 · 윤관석 · 강기운 · 문대성 · 김도읍 · 한기호 · 이현재 · 김을동 · 김동완 · 정문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2977)(계속)	7
4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 · 정우택 · 김동완 · 이명수 · 박인숙 · 함진규 · 윤관석 · 김한표 · 이완영 · 강길부 · 이에리사 의원 발의)(의안번호 3311)(계속)	7
4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신기남 · 윤관석 · 배기운 · 민홍철 · 유성엽 · 김관영 · 김재윤 · 강기정 · 김성곤 · 박주선 · 노영민 · 이원욱 · 박홍근 · 안규백 · 김우남 · 전해철 · 홍종학 의원 발의)(계속)	7
5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5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 · 유승우 · 李宰榮 · 이현재 · 문대성 · 강은희 · 박인숙 · 강길부 · 하태경 · 박성호 · 이노근 · 주호영 · 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7
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정희수 · 문대성 · 박인숙 · 민병주 · 한선교 · 이명수 · 김동완 · 박성호 · 김장실 의원 발의)(계속)	7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 · 유승우 · 윤명희 · 최봉홍 · 김을동 · 김정록 · 주영순 · 김태원 · 이만우 · 박인숙 · 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7
5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 · 배기운 · 유대운 · 정성호 · 박민수 · 양승조 · 강기운 · 이상민 · 김제남 · 이재영 의원 발의)(계속)	7
5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 서상기 · 김장실 · 정문헌	

· 조현룡·강기윤·박인숙·이종진·전하진·정희수 의원 발의)(계속) 7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영록·강창일·이종걸·최규성·주승용·강기정·백재현·김경협·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7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현룡 의원 대표발의)(조현룡·유기준·이완영·이한성·이노근·심재철·유정복·박인숙·한기호·이철우 의원 발의)(계속) 7

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60.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강은희·김태원·김성곤·황영철·김정록·민병주·이낙연·정의화·윤상현·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7

6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주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박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토와 교통 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안과 지난번에 전체회의에 계류됐던 법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위와 법사위도 동시에 개의되는 관계로 국토부 1·2차관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양해하에 각각 법사위와 예결위에 참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유대운·김승남·김성곤·이윤석·민홍철·배기운·신장용·박기춘·정청래 의원 발의)(계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성곤·김관영·박지원·최규성·한정애·김민기·백재현·정세균·임내현·주승용·신장용·변재일·이한성·배기운·정청래·안민석·윤관석·유기홍·부좌현·최재성·서영교·이윤석·김영주 의원 발의)(계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유승우·최봉홍·황영

철·박인숙·이한성·김태원·이군현·조해진·김상민·이진복·박대출·서용교·안종범·박성호 의원 발의)(계속)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신의진·홍문중·김동완·박인숙·함진규·이완영·김한표·강길부·이명수·이이재·이장우·이현승·김태흠 의원 발의)(계속)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기호·정희수·황영철·김용태·송영근·이철우·최봉홍·정문현·조현룡·김진태 의원 발의)(계속)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동철·강기정·오제세·이낙연·변재일·주승용·박주선·장병완·이석현·박병석 의원 발의)(계속)
11.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최규성·강창일·오제세·장병완·김동철·김상희·김우남·우윤근·노영민·김성곤·양승조·주승용·이윤석·배기운 의원 발의)(계속)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김세연·안홍준·유기준·이현승·여상규·노철래·전하진·정우택·신성범·유재중·박인숙·주영순·김희국·김중훈·윤명희·박민식·김도읍·정의화·서용교·현영희·나성린·류지영·김정훈·이재균·정갑윤·문대성·이장우·이채익·이현재·김희정·고희선·이진복·하태경 의원 발의)(계속)

13.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양승조·전병헌·김우남·김성곤·이상민·김현미·안규백·김춘진·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1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김을동·문병호·장병완·최민희·남인순·박홍근·김태년·김성곤·배기운·노철래·이상민 의원 발의)(계속)
17.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유기준·이현재·김정록·정문헌·정두언·윤관석·홍문중·정희수·이에리사 의원 발의)(계속)
18.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명수·박인숙·한기호·정성호·김동완·김태원·권은희·고희선·김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3337)(계속)
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명수·박대동·박인숙·한기호·정성호·김태원·권은희·고희선·김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3347)(계속)
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金永柱·정희수·김세연·이한성·이명수·박인숙·심재철·박성호·이에리사 의원 발의)(계속)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李宰榮 의원 대표발의)(李宰榮·김정록·이명수·이만우·박인숙·이한성·서용교·손인춘·정의화·김을동 의원 발의)(계속)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이이재·박인숙·김희국·권은희·민현주·李宰榮·이종훈·김종훈·김동완·이재오·이종진·김기선·이명수·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정희수·이명수·이한성·정문헌·안홍준·김세연·김성주·유재중·김동완·이종진·金永柱 의원 발의)(의안번호 1953)(계속)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권은희·한기호·조현룡·이재영·함진규·정희수·홍문표·문대성·박대동·김근태 의원 발의)(계속)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조현룡·권은희·이완영·문대성·하태경·신동우·김상훈·신성범·김희국·황진하·강길부 의원 발의)(의안번호 4438)(계속)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2.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이한성·문대성·권은희·유승민·정우택·윤진식·나성린·정의화·여상규·주영순·김재원·이만우·주호영·이종진·김종훈·손인춘·이에리사 의원 발의)(계속)
33.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이재균·남경필·황진하·이만우·김태원·염동열·박민식·김세연·박대동·정몽준·강은희 의원 발의)(계속)
34.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박수현·주승용·이윤석·윤후덕·박남춘·배기운·김영록·신장용·변재일·김관영·김현미·조정식·김태흠·박민수·민홍철·박혜자·이장우·문병호 의원 발의)(계속)
35.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이현승·이명수·이종진·함진규·홍문중·이이재·이노근·윤진식·김태흠 의원 발의)(계속)
3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민기·윤관석·김성곤·김관영·박지원·최규성·백재현·정세균·임내현 의원 발의)(계속)
3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박수현·이윤석·김관영·최원식·민홍철·김현미·전순옥·임내현·양승조·배기운·조정식·김상희·김성곤·윤후덕·이석현·박완주·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4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문대성·정희수·이명수·이현승·이종진·하태경·김태환·이장우·김을동 의원 발의)(계속)
- 42.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균 의원 대표발의)(이재균·김민기·金永柱·김춘진·이채익·이노근·김성곤·박인숙·이종진·정성호·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43.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김기선·金永柱·김우남·문대성·박인숙·신성범·안홍준·이진복·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 44.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황영철·강기윤·김정록·유기준·김명연·박인숙·서상기·강은희·정문헌 의원 발의)(계속)
- 45.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영록·이미경·노영민·김성곤·우윤근·박수현·윤관석·이윤석·강창일·최규성·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46.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이명수·신의진·정희수·김기선·김태호·김정록·박성호·윤관석·강기윤·문대성·김도읍·한기호·이현재·김을동·김동완·정문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2977)(계속)
- 4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정우택·김동완·이명수·박인숙·함진규·윤관석·김한표·이완영·강길부·이애리사 의원 발의)(의안번호 3311)(계속)
- 4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신기남·윤관석·배기운·민홍철·유성엽·김관영·김재윤·강기정·김성곤·박주선·노영민·이원욱·박홍근·안규백·김우남·전해철·홍종학 의원 발의)(계속)
- 5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유승우·李宰榮·이현재·문대성·강은희·박인숙·강길부·하태경·박성호·이노근·주호영·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 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정희수·문대성·박인숙·민병주·한선교·이명수·김동완·박성호·김장실 의원 발의)(계속)

-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유승우·윤명희·최봉홍·김을동·김정록·주영순·김태원·이만우·박인숙·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5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배기운·유대운·정성호·박민수·양승조·강기윤·이상민·김제남·이재영 의원 발의)(계속)

- 5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서상기·김장실·정문헌·조현룡·강기윤·박인숙·이종진·전하진·정희수 의원 발의)(계속)

-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영록·강창일·이종걸·최규성·주승용·강기정·백재현·김경협·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현룡 의원 대표발의)(조현룡·유기준·이완영·이한성·이노근·심재철·유정복·박인숙·한기호·이철우 의원 발의)(계속)

- 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강은희·김태원·김성곤·황영철·김정록·민병주·이낙연·정의화·윤상현·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10시16분)

○위원장 주승용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0항까지 이상 6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장이신 강석호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석호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강석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가액 산정 시 개발로 인한 지가변동요인을 배제하고,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매립면허 양수가액만큼 토지 취득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매립 완료 후 토지 취득 시 매립면허권 양수가액을 포함시키는 특례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혜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매립면허권 양도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하고, 부칙에 매립면허권 양도·양수가액 산정기준의 적용례를 신설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방재지구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재해저감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안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둘째,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서 지구단위계획보다 간소한 성장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계획관리지역 내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 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감리업무 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노근 의원, 한기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정부가 제출한 3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계획과 관련 있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경우 수립 과정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장기화로 국책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계획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국가안보시설의 경우에는 비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

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 등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4건의 도시재생 관련 제정법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전략계획수립권자(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도시재생에 관한 구체적 실행 계획에 해당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 규제에 대한 예외를 비롯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도시재생기금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대신 국가로 하여금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조·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또는 광특회계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장 건축허가 취소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미관지구 내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및 광고물 등이 도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시 및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건축협

정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공장 건축허가 취소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되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에는 취소기간을 2년으로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희수 의원 2건, 김태원 의원, 이재영 의원, 이이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수선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였으며, 둘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 매도청구 합의가 있거나 승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시행 시기를 3개월 연기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의 공사 착수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사업주체로 하여금 시장 상황에 맞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1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착공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철우 의원, 이노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였고, 둘째 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의 완화를 허용하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을 의무화하였으며, 셋째 현금청산 시기를 조정하고, 조합원에게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도 2주택 공급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재건축의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 안효대 의원, 박수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임대사업자가 토지임대료 지불 여부를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심 내 저소득층 및 대학생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임차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넷째, 민간의 참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서 2013년 4월 1일 이후로 신규로 구입한 주택에 한해서는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을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주식공모 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측량기술자와 측량업자는 측량협회를, 지적측량기술업자와 지적측량업자는 지적협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사유 및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안의 내용 중 대한지적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 및 임원 수를 확대하는 규정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도가 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수권을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여 임대보증금에 관한 임차인의 불안 해소와 원활한 매입 추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 대상을 국민주택기금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부도임대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건설기계 관리 업무를 위한 전산정보 처리조직의 위탁 규정 및 그에 따른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의원, 김성태 의원, 박성호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 자료를 발주청에 보고함과 동시에 이를 공사 완료 후 10년까지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및 용역업자에게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의무를 사용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부과하고, 넷째 반품된 레미콘 재사용 시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노근 의원과 신기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시설물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에게 공지하도록 하며, 둘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시설물 관리주체의 협조 의무를 신설

하였으며, 셋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자 등이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홍수여유고를 포함하지 않는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성토 외의 방법도 활용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강석호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기춘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기춘 박기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원 의원, 이상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의 안전 및 알권리 보호를 하기 위해서 수입 자동차 또는 수입 부품과 동종의 자동차 또는 부품을 외국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 그 시정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자동차부품 가격을 공개하며, 공개 대상 부품과 공개 절차 등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박성호 의원, 배기운 의원, 조현룡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신고 기한을 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등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조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승무원뿐만 아니라 기장의 업무방해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하고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승용 박기춘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법안심의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축조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4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는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9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3항까지는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4항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예, 이노근 위원님!

○이노근 위원 아, 이게…… 다음 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승용 예.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노근 위원님!

○이노근 위원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게 지난번 소위하고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서 논의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용어를 ‘위법’이

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특정건축물’이라 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다른 데 혹시나 영향을 미치는 거부감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선례가 있으니 이것을 특정건축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좀 의견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주승용** 법안 명칭을 ‘위법’을 ‘특정건축물’로 바꾸자고, 말하자면 위법건축물을?

○**이노근 위원** 예.

○**위원장 주승용** 장관 입장……

○**이노근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규모를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 범위의 특정한 건축물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65헤베, 단독주택의 경우에 165헤베 미만의 경우로,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 85헤베 미만, 이렇게 3조에서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특정한 얘기를. 그런데 ‘위법’으로 이렇게 하면 모든 건축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주승용** 장관 입장을 이야기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지금 대상이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특정한 건축물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동안 네 차례 양성화 추진 시에도 법령 명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특정건축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승용** 그러면 정부 측 입장이, ‘위법건축물’로 명칭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특정건축물’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서……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 이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위법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이렇게 용어를 바꾸자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양성화’라는 말 자체가 용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장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법건축물이 되었던 특정건축물이 되었던 그 뒤에 따라오는 ‘양성화’라는 용어 자체가, 위법건축물이 어떻게 양성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이노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특정건

축물로 바꾼다고 그러면 무슨 한시적인 특례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꾸어야지, 어떻게 위법건축물이 양성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하나의 용어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법을 위반했는데 그게 어떻게 양성화가 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위법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명명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양성화’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하고, 무슨 특례조치를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특례조치나 이것을 제대로 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내에 똑같은 건축물이 제외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이나 행정이라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유독 홀대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장관께서도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린벨트 내에 있는 동일한 것은 어떻게 할지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승용** 예,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정확하게 저희들이 제안을 드린 것은 위법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바꾸고,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라고 법안 이름을 바꾸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GB 내에 있는 각종, 지금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그러면 위원장이 법안 명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까.

이노근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성화’를 ‘정리’로 이렇게 바꾸면, 정부 측의……

○**강석호 위원** 16항하고 17·18항이 거의 동일하잖아요.

○**위원장 주승용** 예, 16·17·18항이 동일하니까 16항 전병헌 의원님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장관 이의 없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그러면 이 법안 명칭을……

○**심재철 위원** 특별조치라고 하는 것하고 특례라고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낫나요?

○**강석호 위원** 16항에 기 나와 있으니까, 동일한 사안이니까요.

○**위원장 주승용** 그 내용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면……

○**심재철 위원** 같은 이름인데 특별조치법하고 특례법하고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위원장 주승용** 특별조치법이 약칭 특조법 아닙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불러 온? 한시적으로 그 법안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특조법이지요? 그러니까 특별조치법 그러면 임시조치법이지요.

그러니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법안의 명칭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6항, 17항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8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5항까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까지 6건의 법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25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29항까지 4건의 법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30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35항까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34항까지 3건의 법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35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39항까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영 위원** 예.

○**위원장 주승용** 김관영 위원님.

○**김관영 위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의 소위 심사 과정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무려 1시간 이상 논란이 됐던 것이 지적공사의 업무범위에 공간정보에 관한 구축·관리 업무를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고 또 특히 개정안에 지적공사에 공간 정보를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특히 실무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계속해서 그런 의견을 일단은 존중을 해서 저희가 다시 논의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특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실무자하고 차관하고 의견이 달라요, 약간 뉘앙스 차이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내부의 정확한 의견 또 앞으로 국토부가 지적공사 또 지적협회, 업체들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꼭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38항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39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46항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부터 45항까지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46항의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부터 50항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부터 49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50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부터 54항까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53항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54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부터 59항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부터 58항까지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59항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의결은 다 마쳤습니다.

오늘 법률안 의결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장님, 강석호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 박기춘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 제출 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법률안 48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은 하위 법령 정비와 법령 운용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주승용**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0분)

○**위원장 주승용** 의사일정 제61항 국토교통부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현재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 둔화와 소비 등 내수 부진으로 7분기 연속 1% 미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가 계속되고 취업자 증가세도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 활력도 크게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 전체적으로 최근의 경기여건 악화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고, 금번 우리 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 조속한 경제 활력 회복과 경기침체기의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2013년

도 본예산 15조 1780억 원보다 4230억 원이 증가한 15조 6010억 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 21조 3255억 원보다 6767억 원이 증가한 22조 22억 원으로서 부문별 추가편성 금액은 도로 4533억 원, 철도 500억 원, 수자원 447억 원, 주택 700억 원, 산업단지 450억 원, 물류 등 기타 부문이 137억 원입니다.

이 밖에도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택기금에 대한 정부 내 조정을 통해 서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 기금 1조 224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은 첫째,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건설사업의 조기 완공을 지원하고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확대하는 등 청년층의 해외 일자리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지역투자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KTX 탈선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에 취약한 철도시설을 보강하고, 도로포장 정비, 댐 치수능력 증대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열악한 환경의 도심지 재정비지구 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해외 건설시장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체를 중점 지원하고 국토 공간정보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우리 부 소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최소 소요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승용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박상우 기획조정실장 박상우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편성 배경과 방향, 세입 및 세출 예산 총괄, 부문별 세출예산 순서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편성 배경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은 사상 최초로 7분기 연속 전기 비 성장률이 1%를 하회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런 악화된 경제 여건으로 인한 세입 부족 등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생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입니다.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첫째 도로 등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점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중소 규모의 개량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해외시장 개척과 국토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등 SOC 분야 신시장 진출 지원 강화를 통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013회계연도 본예산 15조 1780억 원보다 4230억 원 증가한 15조 60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42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총괄은 2013회계연도 본예산 21조 3255억 원보다 6767억 원 증가한 22조 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884억 원, 교통시설특별회계는 3780억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1103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517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97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70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로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에서 추가 소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등 44개 사업에서 2653억 원을 투자하고 민자고속도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개 사업 보상비 부족분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로의 안전과 환경 개선에 88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로 부문의 세부 사업내역 보고는 유인물 7페이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철도 부문입니다.

일반철도의 경우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철도의 노후 및 취약시설을 조기에 해소하여 행복한 철도 이용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고속철도의 경우 KTX 탈선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대책을 이행하여 선진국 수준의 열차 운행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안은 노후 철도시설 개량과 스크린도어 등 안전시설의 보강에 500억 원, 고속철도의 안전과 시설 개량에 1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철도 부문의 세부 사업내역 보고는 유인물 9페이지 하단 부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분입니다.

해외 건설시장의 진출을 확대하고 해외 건설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하는 공간정보 산업을 활성화하여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신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안은 해외 건설시장 개척과 해외 건설현장 훈련의 지원에 37억 원을 투자하고, 공간정보 산업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등 정보화 사업에 100억 원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수자원 부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에서 추가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14년 홍수기 전까지 댐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282억 원, 치수능력 증대에 120억 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에 4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역권 지방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도로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사업 등에 45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부문의 세부 사업 내역 부분은 유인물의 14페이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택 부문입니다.

노후지역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도심재정비 촉진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에 700억 원을 지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의 추경예산안 450억 원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지 조성에 맞추어 진입도로를 적기에 완공토록 하기 위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5년 이후 완공 예정인 일부 사업은 추경 편성의 목적과 다소 부합치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 재정비촉진사업지원 사업의 추경예산안 700억 원은 13년도 본예산에 지자체의 실소요재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재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반시설비 지원이 필요한 지구에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등 실행행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3번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대청댐 및 안동댐 비상여수로건설 사업의 추경예산안은 각각 100억 원과 20억 원으로 2014년 홍수기 이전에 사업을 준공하여 홍수 피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낮은 사면보호공 설치예산은 감액하여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부항댐 및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 사업의 추경예산안은 각각 27억 원과 100억 원으로 부항댐은 태풍이 올 때마다 큰 홍수피해를 입은 김천시의 홍수피해 예방과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한탄강댐은 임진강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신속히 완공될 필요가 있으므로 바람직한 편성으로 보았습니다.

6번은 생략하고, 다음 4쪽으로 가서 교통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건설사업의 추경예산안 2000억 원은 팔탄 북부 등 44개 도로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용지보상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용지보상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예산집행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집행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사업의 추경예산안 1000억 원은 구리-포천 등 민자유치 도로건설사업에 예산 투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고, 국고 투입이 지연될수록 지가상승에 따라 용지보상비가 크게 증가하므로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하여 집중 투자하려는 것은 예산 절감효과와 함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5쪽에 있는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의 추경예산안 100억 원은 고속철도 시설의 성능 개량을 통해 고속철도의 안전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이어서 필요한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철도건설 부문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미흡한 부분이며 재원이 허용되면 철도건설 부문 예산의 추가반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주승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의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 위원 심사도 안 했는데?

○위원장 주승용 토론하기 전에, 예결심사소위로 토론 끝나고 나면 회부한다는 의결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이미경 위원 그래도 심사를 안 했는데 의결부터 하는 건가요?

○위원장 주승용 대체토론 하기 전에 우선 의결 정족수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국토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넘기려는 의결을 먼저 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憲昇 委員 예.

○위원장 주승용 이헌승 위원님!

○李憲昇 委員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김해 국제공항 활주로 용량 증대방안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4월에서 12월까지 발주된 용역이거든요.

그리고 부산역 일원의 철도부지 종합개발사업의 방향과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승용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토부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별로 일자리 창출효과와 근거를 만들어 보신 게 있으면 주시고요.

또 세부 사업별로 역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반영했는지 하는 것도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토공간기반조성사업 중에서 실내공간정보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개요,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국토부의 올해 예산 집행 관련해서 1/4분기 예산을 조기 집행한 현황 있으면 좀 자

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승용** 오병윤 위원님!

○**오병윤 위원** 국토부 내 공간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 조직 체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지리정보연구원 역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박수현 위원께서 지금 제출 요구하신 공간정보 관련된 자료 저에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승용** 김태흠 위원님!

○**김태흠 위원** 추경예산 편성과정 속에서 지금 산업단지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 15건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언제 완공되는지 15건, 완공예정 그런 계획을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국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완공예정 중에서 지금 진입도로가 지원이 안 된, 언제 완공하는지 연도하고 지금 안 된 부분 이런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주승용**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신장용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용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에서 수원 복선전철사업 기본설계비 40억 원을 아마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동 사업은 2011년 11월에 예비타당성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이 50억 원이 반영이 되었고, 2012년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3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되어야 됴도 불구하고 좀 문제점이 몇 가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 및 역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해서 2012년 10월에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타 보고서상 GTX 또는 동탄 신교통 수단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와 근거를 달았기 때문에 아마 기재부에서 그런 것을 한 것 같습니다. 2013년 5월에서 6월경 타당성 재조사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1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인덕원에서 수원 복선전철사업 기본설계비 40억 원을 반드시

저는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5월에서 6월경 타당성 재조사가 종료되면, 7월 경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하반기부터는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예산 40억 원이 이번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추경예산 반영에 대한 근거는 몇 가지 들 수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GTX와 인덕원에서 수원선 노선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GTX 노선과 수원 인덕원선이 마치 중복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된다는 것은 좀 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1년 KDI 예타 용역 시 분석을 위해 필요한 노선, 역사, 운행 계획 등의 자료는 국토부 자료와 대도심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 최종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본 조사에 반영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당선 연장선과 신분당선 연장선은 완공되더라도 경기 남부 동서로만 연결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철도 교통망 구축을 위해 남북으로 연결하는 인덕원에서 수원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 사업은 실은 작년 2012년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당 지역민들은 이미 이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추경예산 4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오에서 오목천 간 2차도로 확장포장공사 30억 원의 추경예산을 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총 사업비가 5720억 원인데 기 투자된 것이 133억 원, 2012년 국비가 51억 원, 2013년 국비가 135억 원이 되어 있는데 보상을 완료하려면 아마 추가요금액이 한 30억 정도 있어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서남부 안산에서 화성, 수원 지역의 교통량 급증에 따라 연계도로망 확충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사업 준공을 통해 국도 39호선, 42호선 교통량 분산과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추가 국비 확보가 반드시 30억 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되는데 아마 사업이 지연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을 보면 당초 2013년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국비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업이며, 지역 간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교통시설 확충 그리고 국토교통량 분산을 위해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2014년 공사 준공을 위해 13년 추경예산안 국비 30억 원의 추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재조사가 금년 6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사이에는 작년도 예산 기본계획 용역비 37억 원 중 26억 원이 금년으로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본계획 수립비는 내년 예산 반영이 어떤가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본오-오목천 간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는 추가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신장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장관님,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도로 부문 여러 국토건설사업하고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사업 보니까 예산의 지역 편중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 짜실 때 지역별로 균형 있는 예산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축진사업지원 추가사업비가 증액을 700억 이번에 하시는데 지난번에 전국 시·도에서 요구한 금액이 2013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2845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노후불량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이 예산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전국 시·도에서는 이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기반시설사업비는 2845억 원보다도 사실 더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1100억만 했다가 이번에 700억인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증액을 해서 이번

에 1000억 이상은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결위 과정에서 재정비축진사업 지원 부분에 대한 증액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비 증액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정부 때 전 장관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광역시 주 현안사업 중에 홍도 과선교가 있는데요. 대전시 사업비 부족 또 철도시설공단 사업비의 여러 가지 부족 때문에 발주를 해 놓고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우선 한 10억 정도만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님, 이것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게 협의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홍도 과선교는 대전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이장우 위원님 과선교 예산, 우리 장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승용**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많이 바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거기다 또 예정에 없는 추경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추경이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저도 이번 추경을 들여다 보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이게 사실 추경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거나 또 아주 절박하고 또 진짜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장관님도 학자로서도 그렇게 알고 계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번 우리 부에 편성된 추경예산을 보면, 실제 설명에 의하면 필요불가결한 경비라기보다는 연내 집행이 가능한 경비,

이게 추경사유가 되나요?

(주승용 위원장, 강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연내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현재 계속 중인 사업으로서 예산 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좀 지연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을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꿔 주는 그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후덕 위원** 도로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지방의 어느 도로를 보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완공이 안 되었는데도 그 사이에 대통령은 세 번 바뀌고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지역민들은.

그런데 이게 실제 상당한 예산이 필요불가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하면 공기를 단축해서 연내에 준공이 될 곳에 아예 집중을 해 주면 연내 준공이 완료되면 이용을 할 수 있지요, 도로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교통에서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건은 몇 건이 안 되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배정을 해 주었다거나 또는 작년도 예산에서 반영 다 하고도 추경 생겼으니까 또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내 집행해서 연내 완공되는 것 위주로 했었고요, 계속사업 중에서. 그동안에 이제 지연이 되는 부분들은 지연을 좀 당기는 것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지금 이제 상황 파악을 저희가 할 적에는 문제가 현재 추경을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이제 대전제가 되고요. 그 대전제 중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SOC 위주로 일단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서 주거복지 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상당 부분을 반납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번 4·1 부동산대책에서도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그 시행시기가 준비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서 2014년 하반기로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윤후덕 위원** 오히려 이번 추경에 주택바우처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이 시기를 당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범적으로라도. 그리고 주택바우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미 부서에서 연구나 이런 것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 기록에 의해서도 한 14만 가구에 대해서 월 11만 5000원 정도씩을 지급하면 연 2000억 이내의 돈으로 주택바우처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연구가 다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1 부동산대책에서 준비기간을 길게 잡고 실행 시기도 매우 늦게 잡아 놓은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진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을 좀 줄이고 주택바우처제도를 조기에 이번 예산, 이번 추경예산에 꼭 한 500억 정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주택바우처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조기 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주에 사실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 발주하는 착수보고회의에 제가 직접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메커니즘 설계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그 메커니즘 디자인을 처음에 정확하게 어떤 계층한테 해야 될지 그다음에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주택의 품질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등, 그다음에 이 지원을 하면서 지원 금액에 어떤 단층이 생기지 않는지 하는 것들을 정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 용역이 끝나서 우리가 메커니즘 디자인이 정확하게 돼야, 내년이나 돼야 이게 기본적인 시범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요. 일단 그것은 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위원입니다.

장관님 태풍 피해로 아직까지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장하다 여기 오신 유청장님도 잘 아시는데, 우리 김천지역에도 있었지만 거기도 아직까지 피해 조사도 안 되고 있고 태풍 피해 입은 분들은 그로 인해서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빠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태풍 피해 이런 것은 정말로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구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피해 복구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경북 청도에 운문댐이라고 있습니다. 만수위가 152m인데 9월 17일 태풍 산바, 태풍 산바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여기 할 때 갑자기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그 앞에 있는 논과 350가구의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 거기서 물고기 양식하는 분들이 물고기가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피해 조사도 옹게 안 되어 있고, 그분들은 매일 절규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 방에 와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살려 달라.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이분들 하는 이야기가 태풍이 오면 댐 수위가, 만수위가 152m인데 그때는 149m가 물이 차 있었다, 태풍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145m만 되었다라든 이런 상황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인재다, 관리를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 조사를 하고 빠른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이 아니라 배상에 해당될 거예요, 이런 것은.

장관님은 지금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수자원공사 사장님, 운문댐 관리 하는 것 맞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예.

○**이철우 위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역민들 와 있으니까 그분들 한번 만나 보시고 직접 얼굴 한번 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운문댐을 관리해 오던 수자원공사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역주민에 대해 어

쨌든 심려를 끼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청도군하고 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데 명확히 그 원인 분석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K-위터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없고요. 객관적인 저것을 청도군하고 해서 조속히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고요. 상응하는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예,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조속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벌써 열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템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관련해서 자꾸 이게 SOC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SOC도 투자입니다, 이것은. 복지도 SOC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또 경기를 살리려면 SOC를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하고 일본도 추경을 해서 SOC 관련해서 미국도 500억 달러 또 일본의 경우도 5조 20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0배니까 한 50조, 이렇게 추경을 했습니다, SOC 관련해서.

우리는 불과 SOC 관련해서 5930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 정도로 해 가지고는 경기 살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또 기금까지 다 포함하면……

이번에 우리 국토부에서 추경이 전부 얼마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한 2조 가까이 됩니다.

○**이철우 위원** 2조 가까이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이철우 위원** 그중에 5930억 원만 SOC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것 마치 SOC만 하는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좀 잘 알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를 살리는 데 국토부에서 좀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또 건축법 관련해서 제가 개정안을 하나 냈더니 차관님이 오셔서 지붕하고 지붕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내화구조는 주요 구조물만 하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요 구조물에는 지붕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붕하고 지붕틀 차이를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모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이철우 위원** 국회 건물이 있다면 어느 게 지붕이고 어느 게 지붕틀이나? 옛날에 우리가 목조 건물 할 때 용마루, 서까래 이런 게 구조물 같은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일본 국토성에 질문을 했더니, 우리가 법을 일본에서 대부분 가져 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붕틀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붕틀이 없다, 지붕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제가 영상도 다 준비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 법안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반대하지 말고, 왜 그것을 소방관들이 그렇게 절규하는데 반대하고 있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장관님, 이번 추경이 전체는 17조 3000억 정도로 아주 큰 추경인데 실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출예산이 이 안에 얼마나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글썽요, 그 전체적인 규모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구요. 저희 부에 해당하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세요, 예.

서민경제 살리기는 지금 5조 3000억 정도거든요, 17조 3000억 중에서. 나머지 12조는 사실은 지난 정부 예산을 잡으면서 세입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12조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잡았다가, 야당은 그것 안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잡아 가지고 지금 세입보전용 예산이 12조나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국민들이 이번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푸나 보다 하고 말하는 것은 5조 3000억밖에 없어요. 그것 아시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강석호** 아까 서민 살리기라고 그래서 5조 3000억 중에서 어떤 것, 어떤 것이 서

민 살리기를 하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였고 지금 하신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보전용 추경을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에서도 국무총리가 분명하게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 전체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조 3000억밖에 안 되는 서민경제 살리기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껴 쓰면서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그래도 최대한 낼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따져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SOC 예산을…… 댐에 대해서 우선 하나 묻겠는데요. 댐이 실제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저희가 그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 좀 바꾸어야지 돼요. 이것 어느 시절의 얘기를 가지고 한국은행이…… 10억 원 돈 넣으면 13명 정도 취업유발효과가 난다 해 가지고는 돈만 많이 집어넣으면 취업유발효과가 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는 이것 계산해서 돈을 내놓고 있는데, 이미 4대강 사업 22조 넣었지만 정규직, 비정규직 합쳐서 4100명 정도 했다, 고용보험공단의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면밀하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제 댐도 상당히 중장비 가지고 건설하기 때문에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유발효과가 이렇게 날 것이라 생각하고 돈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한국은행도 실질적인 다른 방식의 연구를 해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게 시급성이 떨어지는 댐 건설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그다음에는 또 예산을 잡을 때에 예산편성 지침에서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라든지 성과 미흡이라든지 외부 지적 사업, 이런 것은 삭감을 하는데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그런 사업들, 다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100

억 원, 45억 원, 25억 원, 30억 하면서 지금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잘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예산 자꾸 올리는 것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댐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좀 더 신중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어디서 더 많이 내는가?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한 일자리로 본다면 조사하는 것, 통계 조사하는 것, 일자리가 바로 나와요.

지금 국토부가 낸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조사를 이렇게, 청년 가구 주거지원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 이런 것을 보니까요, 다른 데 비해서 고용효과가 28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12억 원이 있었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10명 고용 효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댐 건설 예산 447억 원 투입해도 한국은행 자료로 한다고 그러면 612명 나와요.

그러니까 주거복지기본법도 만들어야 되고 주택바우처제도도 해야 되고 이러려고 하면 주거실태조사가 바로 돼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와 있다, 무엇을 가지고 이 예산을 잡으려고 하는 신중한 검토가 있었는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유발계수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12년 5월에 발표한 10년 명목 기준 내용인데요,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취업유발계수를 할 적에는 어떤 산업에 투자를 했을 적에 그 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 효과, 그 연계되는 산업들을 다 합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신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구조사원 관련해서는 저희 부에서 만든 그 자료를 인용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그 당시에 얼마를 집어넣어서 310명의 추가 고용이 있었다는 그 자료 중에서 250명 정도가 아마 한 달 임시 고용하고 끝난 조

사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일단 조사작업은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대구 달성의 이종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추경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 후에 내년 예산까지 꼭 기다릴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을 때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장관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지원토록 추경을 했고, 그중에서 국도, 산업단지진입도로 또 건설사업 조기 완공을 위해서 추경 방향을 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기회복을 위해서나 또 내년 예산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업이나 간에 지방자치단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지금 그 건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비 매칭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된 사업들은 좀 포함시키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냐 하면 이번에 추경예산 한 것이 6767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해당되는 것은 단 50억밖에 없습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이렇게 커서 이게 지역균형발전을 제일 첫 토대로 해야 될 국토부가 이런 형태로 추경예산을 세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 공사를 하다가 하반기에는 중단을 시켜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의 경우인데, 2008년부터 시작을 했

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1342억 원이 드는데 현재 까지 356억만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369억 원을 또 요구를 했으나 249억 원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되어서 하반기 부터 공사가 중단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120억 원 정도 증액을 해야 정상적인 공사가 되고 또 공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장관님께서 특별히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대구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3호선이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약 8751억인데 현재까지 1560억만 투자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준공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당초에 254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2040억 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과연 이 250만이 사용하는 도시철도 3호선이 준공이 계획대로 되겠는지 아주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요구한 대로 500억 정도 증액을 해서 내년 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예산 증액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그게 대구지역의 도시철도 3호선이나 기타에 있어서 지방비가 40%가 매칭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추가적인 배정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지원 문제가 먼저 좀 해결이 되어야만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종진 위원 지방비가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 주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지방비가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경 예산 중에 주택 관련…… 대부분 SOC예산에 다 집중이 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미약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토부에서 만든 자료, 예산안 개요 15페이지를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의 전체 목이 나오는데요, 거기 지금 이번 추경에 재정비촉진사업지원이 당초 예산 300억 원에서 700억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특히 2012년에는 300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2013년 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 이런 사업을 추경에 넣어서 당초 2012년까지 하던 사업을 13년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같은 이런 사업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SOC사업 예산을 지금 죽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국토부에서 편성한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산단진입도로 그 현황에 관해서 죽 이렇게 추경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아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2015년 이후에 완공되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슨 조기집행을 한다든가 뭐 한다 하더라도 큰 변동이 없는데 이런 부분 다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총 사업비가 134억 원이에요. 그런데 2012년까지 46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남은 사업비가 88억 원이에요. 그런데 2013년 예산에 15억 원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0억 원을 다시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2012년에 다 쓰지 못해 가지고 2013년으로 이월된 예산이 38억 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현재 예산현액이 53억 원입니다. 이미 쓸 수 있는 예산이 53억인데 여기서 70억 원을 더 배정하면 결국은 올해 예산 123억 원을 배정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도 완전히 오버하는 거예요. 도대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주먹구구식이다, 특히 15건 중에서 7건의 경우에 지금 3월 말까지 집행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뭔가 원인이 있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에 추가경정예산만 배정

한다고 해 가지고 될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청년리더사업,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어서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 기간이 제가 생각할 때 한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몇 명 더 증원하겠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6개월분 인건비 지원하는 게 아니고 1년분 사업비를 또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청년취업 지원 꼭 필요한 일이지만 실제로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현재 지금 국토부에서 연구용역 발주하고 있는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사업 이것을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에 지금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전남 동부지역, 경남 서부지역 중심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섬진강 유역의 44% 이상이 전북지역에서 발원이 되고 섬진강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북지역이 전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용역하실 때 반영하시기를 제가 요구드리고요.

그 외에 김제육교 문제, 장수 변암 우회도로 건설 문제 이런 문제들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데, 추경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보고서 15쪽에 있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가 작년에 300억인데 금년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 사업이 복지부사업하고 통합이 되어서 그쪽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인덕원-수원 전철 사업이 진행되다가 지금 타당성 재조사 들어가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스톱을 시킨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동탄에서 수서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정북 12시 방향으로 올라가고, 수원 의왕 안양 거쳐서 가는 것은 10시 방향으로 갑니다. 노선이 전혀 차이가 나는데도 'GTX 때문에 수요를 흡수한다' 그렇게 말이 되지 않는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기재부에서 매우 잘못된 판단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월비가 26억 남았다고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 45억 원 신청했다가 전액 삭감되어서 한 푼도 지금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서 20억 정도는 반영을 해서 기본설계를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 보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다음에 글로벌청년리더사업에서 이게 지금 해외건설문화교육 사업이 해외건설에 관심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 등도 참여하는 오픈강좌 형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교양강좌 식으로 되어 버려 가지고 실제 강좌 수료자의 17%만이 해외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대상자를 좁혀서 전문화시키는 것이 사업 효율을 더 높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재정비축진사업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2010년에는 55%, 11년에 63%, 12년에 77% 그래서 집행 가능성이 저조한데,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국회가 결산심사를 할 때 해마다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해라 어째라. 그런데도 안 고쳐지고 있고, 이게 07년에서 12년 5년 동안 기준으로 보면 서울이 22%, 인천이 46%, 경기도가 11%, 수도권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집행할 때 실집행률을 반영해서 차등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 국민주택기금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국가재정법에서는 기금액의 20% 이내에서 변경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하고 국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국민주택기금이 지금 현재 9조 원가량이어서 20%면 1조 8000억 원인데 이번에 한 게 2조 2000억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1조 2000억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1조 2000억입니다. 그래서 20%, 1조 8000에 못 미치기 때문에 국회에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퍼센트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금액 기준도 보고 퍼센트 기준도 보고 두 개를 동시에 적용을 시켜서 국민들의 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것은 앞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할 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민주택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자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이나 금리 변동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화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실제 집행은 집행대로 알아서 하시는데 그래도 국회에 보고는 해 주셔야지요, 액수가 크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점에서 20%로 일괄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좀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외건설문화교육사업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새로 반영되는 부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그렇게 개선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댐주변 지역정비사업도 보니까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을 받아야 하는데도 제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실제 지금 돈을 받은 지자체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대로 좀 받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공공투자관리 민자유치사업에서 이게 지금 민자사업과 정부 고시사업에서, 특히 지금 민자사업 같으면 국토부가 빠져나가지요. 국토부에서 제대로 일을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자기들이 투자적격성조사를 하지만 그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습니다. 조사만 하고 털링 손 털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자

사업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 보상비는 재정으로 지원 들어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 부분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PIMAC에서 하고 타당성조사를 주무관청이 시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게 지금 지침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실제 돈은 나가지만 정부에서 어디에서도 최종 책임까지, 감독까지 못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내현 위원** 광주 북구을의 임내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기본방향으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기존사업의 예산만 늘려 주는 형태로 해서 경기침체나 민생안정을 위한 고민 흔적이 보이지 않느냐 해서, 다음 질문에 연결해서 하나를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본예산을 받아 두고도 집행하지 않거나 아까 산단진입도로 건설 15건 중 7건의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은 추경예산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이 들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 대청댐 비상여수로 건설사업 추경예산도 보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 아닌가, 접근수로 60억 원, 방수로·호안공 26억 원, 홍수예보설비 구축 14억인데, 이것들이 각각 8개월씩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에 집행도 잘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넣어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 답변은 다음 추가 질문

과 함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전국의 현재 경전선 복선전철하고 관련된 겁니다. 전국 4대 간선철도망 경부선·호남선·중앙선·경전선 중에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구간만이 유일하게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운행되는 것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임내현 위원 이로 인해서 광주지역 철도화물이 부산으로 가는 경우에 경전선을 이용하지 못하고 익산을 거쳐서 광양으로 가거나, 대전을 거쳐서 부산항으로 우회해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선 광주송정에서 부산까지 가면 거리가 355km인데, 우회 노선을 택하면 465km가 되어서 110km의 불필요한 운행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지요. 경전선 복선전철화는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사업성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작년 국토부 조사 결과 B/C가 0.8%로 사업타당성도 아주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구간에 대한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작년년부터 건의를 드렸더니 기재부에서 삭감이 됐지요. 작년 12월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2013년 상반기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제출해 주신 것은 현 사업의 시급성을 잘 알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억 원을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아까처럼 민생 지원이나 한다면, 이렇게 꼭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사업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는 것일지 이미 금년 것으로 충분히 됐던 산단진입도로 부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산단진입도로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조금씩 쪼개서 여러 지역들한테 배정을 한 것이고요. 그 지역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반기 지금까지, 3월 말 이때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조직개편이 지연되고 신규 사업 발주, 보상 지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굉장히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면 추가 배정된, 추경에서 배정된 부분도 연말까지 전부 집행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내현 위원 경전선 복선화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경전철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를 작년 12월에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예타 선정이 되도록 하고 다음에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요.

지금 그것, 그러니까 이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 예산 배정을 해서 그것이 이제 집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배정을 해도 아마도 집행할 기간이 좀 짧아서 연말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임내현 위원 향후 적극, 다음번에라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임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委員 부산 진구울을 선거구로 둔 새누리당 이현승 위원입니다.

장관님, 민생안정과 어려워진 경제회복을 위해서 대규모 추경이 이번에 조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맞습니다.

○李憲昇 委員 경기 여건 악화로 수도권도 어렵지만 지방의 어려움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SOC에 대한 추경편성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013년도 도로 병목지점 개선 추경사업은 정말 병목지점의 교차로 보수 및 확장 등을 통해서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의 예방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9개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다른 사업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밀양 하남 수산’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李憲昇 委員 그리고 장관님, 도시재생사업이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맞습니다.

○李憲昇 委員 오늘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맞습니다.

○**李憲昇 委員** 우리 부산에 수정터널이라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 정기국회 예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여러 번 제기를 했습니다.

수정터널은 항만 배후도로 건설 차원에서 만들어졌지만 인근의 주거밀집지역을 양분해서 정말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주위 상권도 침체시켜서 문제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정터널의 상부 공간에 인공 지반을 설치하고 양분된 주거밀집지역을 연결해서 단일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사업이 필요한데 이미 2011년도에 국토부 타당성조사에서 B/C 분석이 1.29로 아주 높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서, 작년 정기국회 때 예산 반영을 요청을 했는데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 항목이 없어서 조금 반영하기 곤란하다, 그렇지만 올해라도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그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받았는데, 장관님 이것 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글썄, 그 도시재생법이 이제 바로 통과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것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李憲昇 委員** 아니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결할 때 만약에 도시재생법이 상반기에 통과된다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안입니다.

설계비 예산은 한 5억 정도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설공사는 3개년에 나눠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혹시 도시정책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委員** 그렇게 약속한 적 있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런데 법이 지금 공포 후 6월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憲昇 委員** 그러면 6월 이후에? 6월 이후에 시행이 된다면 6월 이후에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계획은 그때 선정기준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憲昇 委員** 아니지요, 지금 추경할 때 이것

을 편성을 해야지……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추경하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李憲昇 委員** 추경에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우선적으로 법 통과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委員** 오늘 통과된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아직 아닙니까.

○**李憲昇 委員** 그러면 완전히 공포 후 6월 이후에는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6월 이후에 시행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李憲昇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6월 이후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검토하겠습니다.

○**李憲昇 委員** 아니, 검토가 아니고 해 주신다고 하셔야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다른 데랑…… 그 선정기준에 맞아야 되니까요.

○**李憲昇 委員** 아니, 작년에 이야기할 때 분명히 이것은 기준에는 맞지만 예산항목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새로운 법이 통과된다면 새로운 예산항목이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李憲昇 委員**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겠지요?

장관님 들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작년도에 있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憲昇 委員**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은 바뀌시더라도 업무, 서로 한 약속의 연속선상에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 수정산 터널 생활권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가지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어서 전국에 도시재생사업을 꽃피우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토부와 장관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윤 위원** 장관님, 이번 추경에서 장관님이 특별히 중점을 갖고 사업을 추경편성한 예산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어떤 부분에 중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추경의 목적에 맞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전부 고려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병윤 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경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것은 생략하고 우리 국토부 전체 추경과 관련해서, 올해 제가 4월 15일 날 장관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본계획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째로, 균형발전 하겠다, 그다음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신설 도로보다는 혼잡 도로 중심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 다음에 철도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겠다, 그리고 주거복지가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장관님 이제 박근혜정부 들어서 처음 장관이 되셨고, 저는 5년 동안 계속하셨으면 좋겠는데 도중에 어찌 되시더라도 장관님의 지금 국토교통부 운영 철학이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기조가 살려져야 5년 내내 잘 갈 텐데 과연 얼마나 살려졌는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쉬운 측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선 균형발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경전선 문제는 아까 임내현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차로 광주에서 부산이 6시간 반입니다. 고속버스가 4시간입니다.

만약에 광주에서 부산까지가 고속전철이 되면 1시간 40분 걸리거든요. 예타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6시간 반 걸리는 기차를 지금 누가 탑니까? 1시간 40분 되면 다 탑니다. 자꾸 현실에 있는, 예타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병윤 위원** 그리고 광주-완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약간 우스운 얘기이지만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하소연이 있어요. 광주·전남에 고속도로 공사가 없어 가지고 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직원들이 대부분 타 지역에 출장 가서 일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들을 얘기를 해요. 이것도 중요한 반영이…… 사람이 균형 발전 되지 않겠어요, 생활이?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광주 철도 2호선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 기본계획 승인 안 된, 용역 중인 노포-북정, 그다음에 기본계획 심의 중에 있는 사상-하단 전부 예산 반영됐는데 2002년에 기본계획 승인된 광주도심철도 지금까지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전부 철도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 많은 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광주시에서 45억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 광주-완도가 됐든 도심철도가 됐든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20억, 30억, 50억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병윤 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간정보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장관님 강조하셨어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공간정보와 관련해서 혼잡을 바로잡아야 될 게 지금 자꾸, 아까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구축 시스템과 관련해서 지금 공간정보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국가정보지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대한지적공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그러니까 지적공사한테는 ‘해외 연구개발을 해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관리되고 실행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무엇을 가지고 연구개발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적공사는 어떤 역할을 줄 것인지, 공간연구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민간 영역인 협회들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이 종합계획을 가지고 사업 영역을 정리를 해서 종합 정리를 해야만 공간정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고, 특히 해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

물 문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오병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시되 대한지적공사의 역할들을 잘 정리하고 충분히 대한지적공사가……

그리고 공간정보가 기존의 도해지도라든가 수치지도하고 분리된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한 것들을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외건설 관련해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청년 양성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국내 건설 기능인력이 양성되는 토대가 구축돼야 해외 인력이 구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오병윤 위원** 그 부분을 통합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내의 건설 기능인력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굉장히 취약한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윤 위원** 전부 다 조선쪽에 의지하고 있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두에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어쨌든 장관님의 국정철학이, 국토 운영 철학이 예산과 법률이 녹아 있도록 중심을 잡고 계획을 세워 주시고, 이 부분이 박근혜 정권 5년 동안 일관되게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전략 계획을 잘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현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룡 위원** 장관님, 정말 업무보고도 제대로 못 받았을 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관영 위원이 내 지역구인 함안 문제를 거론했는데, 추경예산편성에, 그런데 동료위원의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주거나 협조

해 줘야 할 사항인데 도대체 문제가 있다고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정말로 본인이 있으면 내가 사과를 받아 내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장관님,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추경편성에 대해서 한마디를 언급한 게, 제일 뒷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철도건설 부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미흡한 부분이다’ 이랬는데 내년도 예산 사업을 할 때, 이것은 여야가 대통령선거 때에 공약했던 사항들입니다, 철도건설 부분이.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우리 철도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유념해서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장관님 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현룡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 요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큰 신문에 난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봤습니다.

○**조현룡 위원**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께서 지난 상임위 회의 때, 기사에도 그렇게 났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등 전국 6개 구간에서 문제된 업체 사실상 선정케 해서 공단이 특정 업체를 선정했다’ 이랬는데 그때 공단 이사장은 ‘감사원 권고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철도 시설공단에서 특정 업체를 배제하는 공문이 있으니까 이런 자료하고 또 여기에 근거한 특혜성 의혹 자료를 제가 오늘 드릴 테니까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감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5월 10일까지 자료를, 감사한 결과하고 이것을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조현룡 위원** 이것은 제가 오늘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장한테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현재 4600억 특혜 의혹이라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무슨 조치하는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국장……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경욱**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룡 위원** 신문에 난 게 4월 18일 날인데 이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내가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고 감사관실에서 특별 감사를 해서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저희들이 자료 주신 것 이런 것 전부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여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룡 위원** 그다음에 제가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는데, 우리 장관님은 보고를 갖다 서면보고라든지 대면보고를 소통 차원에서 기안문서라든지 보고서를 갖다가 직원들 직접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조현룡 위원** 그게 바로 소통인데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옛날 권위주의 사고방식으로 대면보고라는 게 없고 보고서상에 어떤 뭐, 왜 그러냐 하면 참 내가 창피스럽지만 보고서상에 보고가 잘못돼 있으면 말이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한다’ 이렇게 메모를 해 가지고 전해 주는데, 장관님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조현룡 위원** 혹시 그런 보고 받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조현룡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은 그 기관장의 품위의 문제이고, 또 우리 공직자라는 집단은 사기라든지 명예를 먹고사는 집단들인데, 이런 것을 보고서 낸 사람이 이런 메모를 받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사표를 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안이라……

○**조현룡 위원** 한번, 제가 이야기한 그런 보고를 한번 받아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조현룡 위원** 이것은 우리가 대통령의 국정철학하고도 거리가 너무 먼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조현룡 위원** 그래서 조직을 관리하는 분은 직원들 사기를 높여 주고, 자존심 살려 줘 가면서 일을 시키고 외압으로부터 병풍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그 기관의 장인데,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또 기관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셔 가지고 정말, 아마 장관님 부임하시고 세종시에 내려가서 근무

하신 날이 며칠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국토교통부가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 업무가 국민 생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종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추경 예산안 중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 건인데요,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작년에도 유사한 지적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민간투자사업 진행 과정에서 보상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은 정부의 귀책사유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렇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래서 그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사업이 착공된 지 1년 됐는데요, 지금 보상비가 몇 % 정도 됐는지 장관님 혹시 아시나요? 10%밖에 안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2012년에 100억……

○**홍문종 위원** 그래서 이게 2017년까지 준공하려면 2105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보상비 확보 추세로는 2017년에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자도로 3년차 보상비 누적집행률을 조사해 보니까 약 60%에서 한 70% 정도가 집행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홍문종 위원** 그런데 구리-포천으로 따지면 이게 한 6000억 정도의 보상비가 집행돼야 됩니다, 이러면 내년서부터 매해 약.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기는 무지하게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혹시…… 제가 만날 한수 이북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경기북부지역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로 중의 하나이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보상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 17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면 보상비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으로도 다 잡혀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예, 하여간 경기북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에서 경기북부를 확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좀 경기북부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의정부에도 미군 부대가 많은데요.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공원 조성에 관심이 그래서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제공모로 당선된 업체가 작년부터 기본설계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기본설계비 1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일을 안 하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아닙니다.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현장조사나 관계부처 사전 협의 이런 것 등 업무는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런데 국제공모는 외국계 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중단되면 외국계 업체의 클레임도 제기하는 것도 있고, 또 국가신인도도 저하되고, 설계품질 확보 예로 등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기본설계비 이것 10억은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장관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업무보고에서 공공정보와 창조경제의 관련성,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드린 바 있는데, 국토공간 기반조성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에 잘 보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홍문종 위원** 몇 가지 질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어서 추진되어 왔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늦어진 감이 있지만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정책조정회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등 정부의 중요 부처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인데,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에 비해서는 성과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게 11년부터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돼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정부가 계획을 주도하지만 공간 정보를 필요로 하는 포털사이트 등 민간업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국토정보만큼은 구글 스트리트뷰 보다는 훨씬 낫다는 그런 평가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정보 공개는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계가, 큰 관련이 있고요, 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생산, 정보 공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추경 편성한 것을 보면 제가 대충 계산을 이렇게 해 보니까 국토건설사업—도로 사업인 것 같아요—그게 대략 한 45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지방산업단지 관련 도로도 그것도 한 25건쯤 되는데……

(강석호 간사, 주승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균형발전 차원이라는 말을 지방 의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그렇게, 꼭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또 역차별이라는 소리를 우리 장관님께서 좀 들어 보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들어 봤습니다.

○**함진규 위원** 주로 수도권의 인구밀집 지역에 도시를 갖고 있으면서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거꾸로 수도권에서는 이런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시흥 지역도 그런 것인데.

지금 제가 도로를 45개, 25개 보니까 산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는 파주·적성 산업단지 진입로 딱 하나고, 그다음에 또 도로건설 사업은 45개 중에서 대략 한 4개 정도 되네요, 4~5개 정도 되는데 말이지요. 이게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마무리를, 오랫동안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단 몇 억이 부족해서 말이지요, 그 완공을 못 하고 있는 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저희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세심하게 좀 밝혀서 수십 억씩 들어가는 도로건설사업에 수도권 밀집지역은 단 몇십 억, 몇 억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완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살펴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저는 해외건설시장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평가위원회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이게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계, 업계, 연구기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서 공무원 1명이 참가하고, 국토부 지원과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위원장은 대학교수가 맡고 있는데, 2012년도의 경우에 총 165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이 중에서 97건이 선정되었어요. 그런데 회의를 단 3차례를 했어요. 상반기 3월 28일 날 한 번, 4월 6일 날 한 번, 하반기 9월 21일 날 한 번. 그러니까 3번 회의를 하고 165건, 그러니까 하루에 대충 한 55건 정도를 처리한 것이지요. 그런데 회의 기간이 보통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합니다.

이게 심층적인 평가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게 아마 제가 자세한 내역은 모릅니다마는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가 완료된……

○**함진규 위원** 사전에 하는 게 해외건설협회에서 아마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검

토·정리·평가 자료를 배포하나 봐요, 일주일 전에 해당 위원들한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렇다면 해외건설협회에서 다 해 버리는 게 낫지 평가위원들이 그것 받아 가지고 3~4시간 하루에 하는데, 보통 한 50건에서 60건씩 처리하는데, 그게 무슨 심층적인……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말이지요, 해외건설시장 개척으로 해서 지원금을 타 갔는데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나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또 요새는 증액까지 요청을 했어요.

제가 관련 업체들 이름은 다 나열을 하지 않겠는데, 검토해 보셔서…… 이것도 굉장히 큰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에 지금 얼마나 들어가고 계신지 아세요? 2010년도에 23억, 2011년도 21억, 2012년 30억, 2013년도에 35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억에서 20억 추가해서 55억 달래요. 이것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 낭비가 심각합니다. 제가 이것 다 이름을, 회사명을 하는데, 이것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느 기술회사는 아예 해외사업부조차도 없어요. 없고, 또 사장 이외에는 해외사업 현황을 아는 직원도 없어요, 돈은 타 가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 부분은……

○**함진규 위원** 이것 예산 낭비가, 몇십 억씩 되는 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몇 억이 모자라서 공사를 몇 년째 완공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 심각합니다. 제가 감사 때 이것을 또 지적을 하겠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해외시장개척 그래서……

수자원공사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예.

○**함진규 위원** 태국 물관리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수주 중에 있나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우리 수자원공사는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료 보니까 해외에 많이 나가고 이렇게 노력을…… 국토부도 건설수자원실장 뭐 이런 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나갔는데…… 철도 쪽은 해외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KTX까지 지금 꽤 됐는데 말이지요.

오늘 철도공사 사장님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면 철도는 지금 저희가 미안마 쪽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주승용**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석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2013년도 우리 추가경정, 제가 산업단지 부문에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정말 시급을 요하는……

이것 누가 짜셨어요, 우리 장관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입니다.

지방의 요구를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강석호 위원** 요구를 받아서?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강석호 위원** 그러면 요구받으면, 요구하면 다 짜야 되나?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것은 아니고요. 산단이 완공되는 순서가 가까운 것, 그러니까 금년이나 내년 정도에 완공되는 것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그 산단이 완공되면 진입도로를 동시에 깔아 줘야 기업 입주,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것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강석호 위원** 이것 짤 때 다 현장조사도 하고 다 했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강석호 위원** 산단이 아직 법인 이름은, 민간이 하는 것은 법인 이름은 세워졌는데 토지수용도 안 되어 있고, 법원에 지금 분쟁이 붙어 있는 곳도 있고, 전혀 시작도 안 됐는데 이게 진입도로 예산이 들어간 것도 있다면 어떻게, 그것은 관계없는 겁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저희가 판단하기에 신규가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정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얘기하지 말고, 신규가 있다 하면…… 산단이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하는 게 있고 국가가 하는 게 있고 민간이 하는 게 있잖아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강석호 위원** 이게 민간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여기는 다 지방산단입니다. 지자체가 하는 산단입니다.

○**강석호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에?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강석호 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확실하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확실하게 내용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웠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주승용**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발언대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강석호 위원** 책임지고 얘기하라고, 책임 있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민간사업자가 하는 산단이 몇 개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아니, 민간사업자가…… 그러면 왜 그것을 다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그래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산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석호 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물론 너무 광범위하니까 포괄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짜자 하니까 정말로 써야 될 때는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대충 SOC에 더 없으려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이 산단 문제도 여러 위원이 거론을 했지만 지금 시작도 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이게 진입도로 넣고 이런 조치는, 이것은 너무 업무를 해태하시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보상하고 발주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5월부터 집중 집행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을 한 겁니다.

○**강석호 위원** 그러면 연말에 이 실집행을 관계에서 이것 넣으면 책임질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제가 책

임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당장 내가 아는 부분에도 한두 가지가 지금 로폼이 붙어 가지고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게 공사가 되겠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저희가 판단한 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요,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특정 지역을 찍지는 않겠는데, 예를 들어서 당진 송산에도 자치단체가 지금 하려다가 민간한테 또 넘어간 것 아니요? 민간에 넘어가서 지금 하려다가 토지가 수용이 안 되니까 수용령을 내려 가지고 지금 로폼하고 붙어 가지고 지금 난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과연 추정편성으로서 적합한 그런 부분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강석호 위원 이 부분에서 30대 선도 프로젝트 이게 이명박 정부 때 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예산 자체가 어떻습니까, 집행을 한번 보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게 28개는 전체 집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2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시다.

○강석호 위원 지금 그러면 진행률이, 올해 추경을 안 하더라도 진행률은 잘 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아니, 진행률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은 28개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석호 위원 진행률에 대해서 오후에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승용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신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남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 목적이 경기침체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지

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교통서비스 조기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신기남 위원 세출 증가가 6700억 정도인데, 그중에 교통이 보니까 5170억이 되었어요, 교통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신기남 위원 도로가 4500억, 철도가 500억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64페이지에 잘 지적해 놓았는데, 도로건설이 3650억 이렇게 돼요, 도로 건설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신기남 위원 그런데 철도 건설은 없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신기남 위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도로 중심이에요. 철도가 너무 무시되고 있어요. 방치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철도야말로 기간산업이고 서민의 교통인데…… 서민들이 철도를 이용합니다, 도로보다.

그런데 너무 여러 군데 압력에 의해서 도로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철도 건설도 병행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철도 건설도 일자리 창출, 서비스 개선 효과가 이게 더 큰 것 아닙니까? 어때요, 비교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뭐,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지금 철도의 경우는 새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금년 말까지 이게 완공이 되거나 집행이 완료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금년 말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말까지 일단 마무리될 수 있는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기남 위원 아니 글썄, 그렇다면 자꾸 우리가 근시안적이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아니, 이것이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남 위원 추경도 다 일반예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어떻게…… 뭘 좀, 철도 건설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기남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위원도 주장을 했잖아요. 염두에 둘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64페이지 한번 읽어 보십시오, 검토보고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그리고 57페이지를 봐도 일반 철도 노반시설의 66%가 30년 이상 경과했고 전기 시설의 21%가 노후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러면 철도개량비 투자가 도로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 부분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저는 국토부의 기본적인 생각이 철도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닌가. 당장은 돈이 많이 들지요. 그러나 그것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철도 건설이 중단되어 있고 유지보수도 굉장히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철학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는지 한번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장관 계실 때 학자답게 근본 구조문제부터 한번 착안해서 우리 교통 분야가 어떻게 구조개혁이 되어야 하는 점이 없는지 그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그렇게 어떤 관행에 젖어서 천편 일률적으로만 따라갈 게 아니라, 평소에 학계에서 구상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있습니다.

○**신기남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데 정부가 다 편성해서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사후에 검토하는 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국회의 심의가? 다 해 온 것인데?

장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관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세계 여러 나라를 볼 때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는 제도를 가진 나라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많은 경우 대부분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부터. 물론 정부하고 협의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는 심의권만 가져요. 그것도 원칙적으로 증액은 못 하고 또 감액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국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 뭐 하러 심의하느냔 말이에요, 정부를 상대로 올려 달라고 애걸하고. 모조리 짜 와요, 정부가. 이런 국회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말할 성질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글썄,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

○**신기남 위원**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글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승용** 신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은 위원** 박상은 위원입니다.

장관님, 사실 본 위원이 지난해 6월 달에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을 작년 하반기에 세워야 된다고 사실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추경이라는 것이 좀 우리가 선도적인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번에는 실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4·1 부동산대책하고 추경이 같이 효과를 나타내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국토교통 쪽에 추경 예산이 좀 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지금 대부분 도로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박상은 위원**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좀 노력하면 더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추경안이기 때문에 금년 내로 완공이 되거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것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박상은 위원** 제가 볼 때는 특히 우리 SOC 쪽에는 좀 완공 위주로 가야지 여러 가지 정부가 노력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 쪽하고 정책적인 회의를

하고 우리 당도 물론, 우리 국회 쪽에서 제기도 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구에서 한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인천에 도시철도2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깐 얘기를 드리면, 원래 2018년까지 하게 되었던 것을 갖다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2014년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었고, 그것을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현찰로 줄 수는 없고 인천시가 채권을 발행해서 하면 계획대로 주겠다 그래 가지고 이자까지, 원금까지 다 보전해 주겠다고 그래서 잘 됐던 건데 인천시가 돈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2014년을 2016년으로 연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인천시장이 연락이 오기를 이번에 자기들이 40%에 해당하는 추경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숫자가 나와 있지 않은데 많아봤자 인천시에서 한 200억 정도 세우면 우리가 60%이니깐 한 3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저녁에 확인되면 내일 예산소위에서 반영을 시킬 예정인데 어떻게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저거 해 주셔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지금 제 생각에 인천시에서 현재 지방비 148억 원 증액안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면 지금 추경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아까 노선 문제…… 우리 인천에 수도권 전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지금 우리 인천 쪽은 대부분이 민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인천에서 김포 민자 노선에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발생되어 있어요, 노선 문제로.

그런데 이것이 노선이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가지고…… 물론 이 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로고 빨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민원들이 계속 있어서 민원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또 건설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좀 한번 실무자들 시켜서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얼

마가 추경에도 있는데 그것이 확인되고 나서 저는 확인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도심주거환경 개선으로 사실 국토부에서 한 3000억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1100억밖에 못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했는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적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작년에 3000억 목표했던 것이 1100억인데 2000억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 900억 정도 이번에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산실하고 같이 좀 설득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 부분은 저희가 한 2000억까지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서 한 200억쯤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상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박수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을 하나 걱정을 좀 할까 합니다.

장관님, 여러 가지 부동산대책 수립하시느라 애쓰셨고 또 보면 현장의 여러 가지 점검도 다니시느라고 많이 노력을 하시던데, 또 이런 추경과 관련해서도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 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격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번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 추경에서 좀 앞으로는 수정되어야 하겠다 하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대규모 세입예산 보전을 위한 슈퍼 적자 추경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초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첫째 원칙을 우선 말씀드리고.

둘째는 세입보전 규모를 축소하고 세출을 늘려서 금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과 민생복지 지원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과 관련해서 일차리 창출과 서민복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좀 늘려야 하겠다.

넷째,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적자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큰 틀에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국토부 추경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개 중복이 되고 앞에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국토부 추경안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추경 편성의 원칙 및 방향에 다소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오전에 '예산 확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확보를 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러한 계속되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보태기식으로 추경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향후에는 좀 지양을 하는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오전에 답변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가 충분히 답변을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 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 서민복지보다 토목사업에 치중한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오전에 SOC도 투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제가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관께서는 SOC사업이 고용유발계수가 높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또 하셨지요.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전체 우리 국토부 추경예산 중에 SOC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함께, 전체 동의는 아니더라도, 함께 좀 생각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의 순계상 대통령선거에서 나왔던 대통령님의 공약이나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새롭게 공유되었던 이런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이 기왕에 추경을 하려면 좀 그런 측면도 많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오전에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님의 공약사항 중에 국토공간 기반 조성사업 100억 원 이것 하나 정도만 포함된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구멍이 나지 않도록 잘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거복지 분야가 좀 취약하다 이런 지적도 오전에 받으셨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예를 들어 국민주택기금 추경 1조 2240억 원인가요, 그것을 보태면 약 1조 3000억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주택기금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구입 전세금 용자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복지에는 거리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어요. 주택마우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가서 메커니즘 디자인을 좀 더 정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충분하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좀 지적을 받으셨지만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취지대로 이것이 잘 설계가 되어서 좀 늦더라도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에 신경을 바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 분야 사업에 지역의 형평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충남의 경우에만 봐도 일부 지역에 좀 편중된 느낌이 있어요. 물론 사업이 진행되고 연속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편중 현상, 아까 이장우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서 본 위원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재 위원 이이재 위원입니다.

이번 정부 추경예산 편성 목적은 첫째, 경기회복 경기부양 효과 그리고 당장 시급한 민생대책, 하우스푸어 같은 사회안전망 대책 마련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위의 입장에서는 SOC사업이 중요한데, 그간에 보면 대부분의 SOC사업들이 도로·철도·항만 같은 사업들이 상당히 예산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사업기간도 대개 다 3년 이상 길게는 10년 내에까지 걸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산업화시대에 보면 계획기간 내에 달성을 다 합니다. 오히려 이르면 몇 년 앞당겨 조기 준공했다 하는 식으로 홍보가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 계획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렇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 이유는 뭘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게 기본적으로는 예산 쪽 재원확보가 조금 미진했던……

○**이이재 위원** 적기에 적정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지요.

이런 문제가 결국은 해당지역에 SOC사업이 착공이 됐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언제까지 완공될 텐데……’ 하고 지역경제 경기에 미치는 효과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짚끔 짚끔 배정되어서 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원성을 듣거든요.

특히 이게 해당지역의 하도급 업체들이 연중 일거리를 받을 것이라고 좋아했는데 이게 몇 개월 하다가 또 쉬고 말이지요. 그다음에 또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이 계속사업들이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에 일반관리비 추가되는 부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이재 위원** 특히 이것이 지역업체나 중소기업 업체들이 공동 수급한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중소기업한테 전가되어 가지고 심지어는 전혀 재기 불가능한 파산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고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이재 위원** 따라서 우리가 경기부양 효과를 제대로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획된 사업이라도 적기에 계획한 대로 완공하는 일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보자면 지역별로 또 그런 것들이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경우 38번 국도라든지 동해안고속도로 등 이런 것이 원주 관리청, 전국 관리청별로, 국토관리청별로 5000억 이상 예산 규모로 2000년도 이후에 착공된 것들 가운데 계획대로 완공된 것, 혹은 연기가 된 것, 또 실제로 앞으로 국토부 관점에서 확실히 완공시킬 수 있는 목표연도,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리고 38 국도 같은 경우는 전부 4차선인데 딱 도계에서 태백구간까지만 3차선입니다. 물론 이게 고개가 경사가 높아서 그런데, 저희 지역이라 제가 현장 방문도 해 봤습니다. 보면 약간의 선형 변경만 주면 충분히…… 4차선까지 하면 더 좋지만 3차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선형 변경에는 그다지 예산이 많이 추가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선형 변경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 예산 낭비로 비난을 받거든요. 그래 놓았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 되면 선형 변경 예산을 또 새롭게 투입합니다. 이렇게 중복투자의 예산 낭비를 하느냐 이거예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아예 선형을, 약간의 예산 증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수정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대 위원** 울산 동구 출신의 안효대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재정비촉진사업지원 사업 예산에 보니까 70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안효대 위원** 한 63.6% 증액이 됐는데요, 이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해서 도시주거환경 개선도 하고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국토부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2009년도부터 보니까 매년 국고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왔는데, 자치단체마다 보니까 매년 이월이 되고 재이월이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09년도에 보니까 집행률이 2.0%, 10년도에 55.3%, 11년도에는 63.5%, 지난해에는 77.3%…… 좋아지기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집행률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는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게 초기단계에서 조금 지체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이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면서 앞으로는 집행률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시도별 집행률도 보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100%가 되고요, 대전·부산 같은 데는 96%, 87.5%, 인천은 45.9%, 서울은 21.8%, 충남은 13.1%, 경기도는 11.4%인데요, 문제가 있는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집행률이 낮은 데는 점검을 해서 집행률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안호대 위원** 이번에 700억이 추가되면 본예산하고 전년 이월액을 합치면 2057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지난해 보니까 876억이 집행이 됐는데, 한 2.3배 정도 규모인데 금년도에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한 2000억 정도까지는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호대 위원** 어쨌든 재정비축진사업이 지원 효과가 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대상기업 선정 건이나 그다음에 예산 집행 가능성이라든가 사업 시행 여건 등 잘 좀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대 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거의 질도 높이고 또 주택시장 정상화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의 어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2단계 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단계 사업지도 선정 준비를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안호대 위원** 보면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 중에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울산 동구 지역에 일산진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안호대 위원** 이게 보면 2004년도에 사업지로 선정됐다 LH가 그 당시에 129억 7600만 원 규모에 대해서 공동주택건설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에 2010년도에 LH가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우려곡절을 겪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혼란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불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정부기관이 이렇게 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또 파기하고, 이것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것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호대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개발 방식에서 현지개발방식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한 90억 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안호대 위원** 노선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요. 이 지역은 보면 그야말로 50년대, 60년대의 주거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대도시 한 가운데에. 이것 좀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대 위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보니까 토털 15건인데 4월까지 현재 집행률을 보니까 45.9%, 전혀 집행되지 않은 곳이 한 일곱 곳 정도가 되네요.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안호대 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저희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집행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호대 위원**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미포산단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9.5km 중에 8km가 완공이 됐고요, 1.5km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안호대 위원** 이것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안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위원** 김태흠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건설업체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인 제언을 드린 바가 있

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저하고 똑같은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흠 위원**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 부처하고 협의하는 그런 문제를, 이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히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처들하고 협조관계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토부 추경안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역시 SOC 확대를 통해 토건족 배만 불리는 삽질 정권이다' 뭐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 봤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봤습니다.

○**김태흠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지금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시키고 고용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김태흠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가면…… 나는 사실 여기 이미경 위원이 계시면 참 유감을 표명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계시지 않는데, 초선도 아니고 5선 의원이 말이야 이렇게 언론플레이하고, 내용도 보니까 이게 지금 엉터리예요.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죽 들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찾아가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어야지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해명자료를 다 뿌리고요 대처를 했습니다.

○**김태흠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사실은 좀 지적을 받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게 본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단기적인 정책효과가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흠 위원** 그런데 지금 산단진입도로 보면 말이에요, 2015년도에 완공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집어넣으면 그렇기 때문에 또 오해를 사고 이게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런데 2015년에 그제 완성이 되지만 지금부터 기반이나 이런 것을 같이 진행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흠 위원** 그러니까 기반은, 그 진입도로들은 대개 짧잖아요. 짧은데, 대부분 1년이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완공인 이런 데들은 또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고 뭐가 효율적인가 이 부분은 다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지,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봐 봐요. 지금 충남 같은 경우 내포신도시에 도청을 이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입도로가 수덕사IC에서 내포신도시 간 8.43km인데 이미 도청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추경이 시급한데, 지금 도청 이전했지 각 기관들이 다 이전을 했는데 진입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런 데가 더 시급한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장관님, 내일 예결소위에 누가 나오시지요? 1차관님이 나오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내일 2차관께서 가실 겁니다.

○**김태흠 위원** 이 부분 말이에요,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한 100억 정도 반영 좀 시키세요. 그리고 이 산단에서 빼세요. 내일 오실 때 산단에서, 선후를 따져 가지고 어디를 뺄 것인가 생각을 해 가지고 오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다 마쳤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2차 질의 바로 들어가는데 함진규 위원님이 좀 급한 일이 계셔 가지고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

○**함진규 위원** 제가 지역에 좀 행사가 있어서 업무보고 때문에……

국토공간 기반 조성 관련돼 가지고 이게 SOC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좀 안 되는 겁니까? 기재부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기재부하고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함진규 위원** 그래서 이게 정보화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어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재부 설득 좀 많이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다음에 실내공간정보 구축 사업도 어제 저희들이 법안심사위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특히 보안 문제가…… 내용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래서 보안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공개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내부 공간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

간단하게 시설공단도 나와 계신데 말이지요, 지금 추경예산 하면서 굉장히 여러 말씀이 많은데 저희 지역에 지금 택지개발 많이 하는 것은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장관님이 잘 아시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이런 보금자리주택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데 말이지요, 신안산선 예산이 장관님 오시기 전에 지난 권도엽 장관 계실 때 저희 국토해양위에서 전원 일치로 해서 300억을 만장일치로 해서 통과를 시켜서 올라갔더니, 이게 저희들 14명 위원들이 연판장까지 돌리고 장관 찾아가고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결국은 기재부의 반대로 이게 10억 원에다가 부대의견만 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결국 국토부의 의지가 굉장히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게 10년 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을 용의 없어요?

아니, 제가 아까 역차별 말씀도 드렸는데 오히려 사람 많은 데는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균형발전’, ‘균형발전’ 해서 지방으로만 자꾸 내려가고 모든 예산 편중이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글썄, 이게 지금 그춰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추경에 반영하기는 조금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어서……

○**함진규 위원** 아니, 서민주거 주택을 엄청 짓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아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금년 내로 지출을 완료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 이사장님, 신안산 사업이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든 민자사업으로 하든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해 가지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 지금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택지개발에 따른 주거수혜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실무적으로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진규 위원** 그게 작년에 한다고 하다 올해 4월에 한다고 하다 또 6월에 된다고 했는데, 권도엽 장관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게 또 넘어오고……

용지보상비 10억 받은 것 말이에요, 수시배정 예산 받은 거, 그게 원래 용지보상비로 책정된 것인데 조달청 공사비 심사로 8억 원 사용하고 나머지 2억 원은 국토부에서 민자사업 적격심사 용역비로 사용할 계획이라면서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 국토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개입을 못 했나요, 이것에 대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 현재까지는 국토부에서 민자사업의 적격성 심사를 하면서 민자사업으로 할 것인지 국책사업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제가 볼 때는 민자사업 적격성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자사업으로 가든 국책사업으로 가든

빨리 해 주는 게 최고거든요. 보금자리주택은 다 갖다 집어넣고 기반시설은 하나도 안 해 주면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LH 관계자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LH에서도 지금 이런 철도사업이 빨리 되어야지만 분양이 제대로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장관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월곶-판교선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것하고 마지막으로 은행천 상습 침수구간, 181억에서 지금 421억으로 서울국토관리청장한테 총량 증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 회의는 26일 금요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 추경안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추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 위원(29인)

강 석 호	김 관 영	김 태 흥	문 병 호
민 홍 철	박 기 춘	박 상 은	박 수 현
변 재 일	신 기 남	신 장 용	심 재 철
안 호 대	오 병 윤	윤 진 식	윤 후 덕
이 노 근	이 미 경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장 우	이 종 진	이 철 우	이 현 승
임 내 현	조 현 룡	주 승 용	함 진 규
홍 문 중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허 태 수
전 문 위 원	김 요 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	관	서	승 환
기	획 조 정 실 장	박	상 우

국 토 도 시 실 장	정 병 윤
철 도 국 장	김 경 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 건 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 광 재

【보고사항】

○의안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3. 3. 18 심재권·유기홍·김춘진·김성곤·전정희·인재근·최민희·유성엽·전순옥·조명철·유은혜·강동원·조원진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3. 3. 18 정희수·김태원·정문헌·김영우·고희선·조명철·김재원·김성곤·박대동·김상훈·이명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9일 회부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3. 3. 18 이노근·이장우·함진규·박상은·이현승·안효대·오병윤·이명수·윤진식·이이재 의원 발의)

3월 20일 회부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3. 3. 20 이명수·김광진·김을동·정희수·강기윤·박인숙·이상일·조현룡·李宰榮·문정립 의원 발의)

3월 21일 회부됨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2013. 3. 21 정부 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 의원

대표발의)

(2013. 3. 21 오병윤·김미희·이상규·이석기·김선동·김재연·이명수·윤후덕·김경협·유성엽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2일 회부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현룡 의원 대표

발의)

(2013. 3. 21 조현룡·이장우·정우택·한기호·이노근·이명수·안홍준·김한표·함진규·이철우 의원 발의)

3월 23일 회부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은 의원 대표발의)

(2013. 3. 20 박상은·윤진식·조현룡·함진규·

이헌승 · 이장우 · 이노근 · 홍문종 · 심재철 ·
윤후덕 · 이미경 · 신장용 · 안효대 · 문병호 ·
민홍철 · 박수현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3. 3. 22 함진규 · 조명철 · 이언주 · 박인숙 ·
민병주 · 이종진 · 주영순 · 이장우 · 김을동 ·
이명수 · 이헌승 · 손인춘 · 박대출 · 윤명희 ·
강은희 · 이에리사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3. 3. 22 이노근 · 이명수 · 이이재 · 이장우 ·
함진규 · 이헌승 · 김태흠 · 김한표 · 이완영 ·
김희국 · 박인숙 의원 발의)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
발의)

(2013. 3. 22 이노근 · 이명수 · 이이재 · 이장우 ·
함진규 · 이헌승 · 김태흠 · 김한표 · 이완영 ·
김희국 · 박인숙 의원 발의)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3. 3. 22 주승용 · 김영록 · 이미경 · 노영민 ·
김성곤 · 우윤근 · 박수현 · 윤관석 · 이윤석 ·
강창일 · 최규성 · 김관영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3. 3. 22 심재권 · 최동익 · 홍종학 · 전정희 ·
인재근 · 김성곤 · 이석현 · 배재정 · 김형태 ·
이목희 · 박혜자 의원 발의)

이상 6건 3월 25일 회부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3. 3. 25 이명수 · 박민식 · 민현주 · 권은희 ·
이우현 · 김세연 · 이운룡 · 박원석 · 김을동 ·
조명철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3. 3. 25 이헌승 · 박창식 · 한선교 · 김태흠 ·
윤상현 · 서용교 · 박민식 · 나성린 · 이명수 ·
이진복 · 박대출 · 윤영석 · 김희정 · 이상일 ·
손인춘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6일 회부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3. 3. 26 주승용 · 김영록 · 이미경 · 노영민 ·
김성곤 · 우윤근 · 박수현 · 윤관석 · 이윤석 ·

강창일 · 최규성 · 김관영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3. 3. 26 주승용 · 김영록 · 이미경 · 노영민 ·
김성곤 · 우윤근 · 박수현 · 윤관석 · 강창일 ·
최규성 · 김관영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13. 3. 26 유기홍 · 이찬열 · 윤관석 · 박홍근 ·
설훈 · 추미애 · 유성엽 · 임수경 · 정진후 ·
유은혜 의원 발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3. 3. 26 정성호 · 문병호 · 민홍철 · 황진하 ·
강동원 · 정청래 · 김현미 · 추미애 · 부좌현 ·
최재성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27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
발의)

(2013. 3. 28 류지영 · 정우택 · 이재영 · 김재원 ·
신의진 · 박인숙 · 안홍준 · 심윤조 · 주영순 ·
윤명희 · 이한성 · 강은희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3. 3. 28 전해철 · 최원식 · 배기운 · 한명숙 ·
백재현 · 최재성 · 박남춘 · 김태년 · 이춘석 ·
박영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9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3. 3. 29 이윤석 · 민홍철 · 윤후덕 · 신장용 ·
홍영표 · 강동원 · 이언주 · 함진규 · 김관영 ·
부좌현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2013. 3. 29 김재경 · 이종진 · 권은희 · 여상규 ·
김한표 · 김용태 · 강기윤 · 이낙연 · 정성호 ·
문정림 · 신성범 · 이한성 · 박인숙 · 조원진 ·
이자스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일 회부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3. 4. 2 최재성 · 김재윤 · 김현미 · 배기운 ·
윤관석 · 윤후덕 · 이용섭 · 이윤석 · 정진후 ·
조정식 · 황주홍 · 서기호 의원 발의)

4월 3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
발의)

(2013. 4. 3 김한표 · 강은희 · 하태경 · 金永柱 · 김세연 · 김동완 · 李宰榮 · 권성동 · 이강후 · 문대성 · 신의진 · 강기윤 · 여상규 · 이만우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 발의)

(2013. 4. 3 이이재 · 이종훈 · 유승우 · 정문현 · 김상민 · 남경필 · 김진태 · 한기호 · 박인숙 · 김형태 · 김태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4일 회부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4. 4 김관영 · 김춘진 · 유성엽 · 전정희 · 이상직 · 김윤덕 · 박민수 · 강동원 · 최규성 · 이춘석 · 김성주 의원 발의)

4월 5일 회부됨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현룡 의원 대표 발의)

(2013. 4. 5 조현룡 · 함진규 · 한기호 · 이한성 · 김장실 · 이장우 · 이철우 · 윤진식 · 김재원 · 이현승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용 의원 대표발의)

(2013. 4. 5 신장용 · 김영록 · 박수현 · 이연주 · 강동원 · 김관영 · 배기운 · 이윤석 · 김성곤 · 김성주 · 백재현 의원 발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 발의)

(2013. 4. 5 이노근 · 안홍준 · 김동완 · 심윤조 · 조명철 · 정문현 · 이현재 · 이한성 · 조원진 · 박민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8일 회부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3. 4. 8 김기선 · 문대성 · 김춘진 · 한기호 · 이이재 · 송영근 · 이만우 · 김재원 · 신학용 · 김성태 · 이재오 · 이한성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3. 4. 8 이노근 · 조현룡 · 권은희 · 이완영 · 문대성 · 하태경 · 신동우 · 김상훈 · 신성범 · 김희국 · 황진하 · 강길부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9일 회부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 발의)

(2013. 4. 8 문병호 · 홍종학 · 배기운 · 민홍철 · 박수현 · 전순옥 · 윤관석 · 박남춘 · 김동철 · 우원식 의원 발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3. 4. 8 윤후덕 · 이찬열 · 윤관석 · 부좌현 · 남인순 · 김태년 · 남경필 · 배기운 · 전해철 · 홍종학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2013. 4. 9 이이재 · 박인숙 · 김희국 · 권은희 · 민현주 · 李宰榮 · 이종훈 · 김중훈 · 김동완 · 이재오 · 이종진 · 김기선 · 이명수 · 강석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0일 회부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3. 4. 10 김기현 · 김세연 · 유기준 · 이현재 · 김성곤 · 정희수 · 이한성 · 이윤석 · 권성동 · 조명철 · 황진하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중 의원 대표발의)

(2013. 4. 10 홍문중 · 이한성 · 유승우 · 김태원 · 박인숙 · 이만우 · 김한표 · 김상민 · 함진규 · 이에리사 의원 발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3. 4. 10 강석호 · 이현승 · 이명수 · 이종진 · 함진규 · 홍문중 · 이이재 · 이노근 · 윤진식 · 김태흠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1일 회부됨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3. 4. 11 강석호 · 이명수 · 윤진식 · 양승조 · 노영민 · 박수현 · 김태흠 · 정우택 · 이인제 · 이장우 · 홍문표 · 송광호 의원 발의)

4월 12일 회부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 발의)

(2013. 4. 12 박수현 · 주승용 · 이윤석 · 윤후덕 · 박남춘 · 배기운 · 김영록 · 신장용 · 변재일 · 김관영 · 김현미 · 조정식 · 김태흠 · 박민수 · 민홍철 · 박혜자 · 이장우 · 문병호 의원 발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 의원 대표발의)

(2013. 4. 12 오병윤·김재연·김미희·이석기·이상규·김선동·배기운·염동열·양승조·이윤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5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3. 4. 17 이명수·손인춘·이헌승·이노근·박상은·안효대·강석호·함진규·이이재·홍문종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3. 4. 17 김태원·황영철·유승우·정희수·김재원·이만우·이명수·박성호·강기윤·정우택·이에리사·안홍준·박인숙·이상일·조명철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3. 4. 17 김태원·유승우·정희수·김재원·이만우·이명수·박성호·강기윤·정우택·이에리사·안홍준·박인숙·조명철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13. 4. 17 김희국·권은희·이만우·이한성·안홍준·유승민·송광호·손인춘·민현주·이학재 의원 발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윤진식 의원 대표발의)

(2013. 4. 17 윤진식·김한표·유승우·주승용·조현룡·윤후덕·신장용·이종진·신기남·함진규·박상은·강석호·이철우·이노근·안효대·이이재·이장우·노철래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3. 4. 17 김상희·박홍근·박수현·이미경·김영주·우원식·남인순·장하나·김현미·유기홍 의원 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 4. 18 정부 제출)

이상 7건 4월 18일 회부됨

○심사기간 지정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 4. 18 정부 제출)

4월 23일 심사기간을 4월 24일까지로 지정함

○청원 회부

NH공사 인천지역본부 신축다세대 매입 촉구에 관한 청원

(2013. 4. 1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숲속마을 주공아파트 102-1601 최병협 외 5인으로부터

문병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 12일 회부됨